##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3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백혜련·박성준·양정숙

박홍근 · 주철현 · 김남국

오영환 · 최종윤 · 이탄희

이재정 · 장철민 · 전혜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증금 예치 등 도주방지 수단의 마련이 절실한 상태임.

이에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법무부령으로"를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출국명령) ①・② (생	제68조(출국명령)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③
발급할 때에는 <u>법무부령으로</u>	<u>2천만원 이하</u>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	수 있으며, 법무부령으로
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4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	
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	
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	
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	
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야 <u>한다</u> .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
	시킬 수 있다.
<u>&lt;신 설&gt;</u>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